

기강감사 결과보고서

-취약시기(VIP 해외순방)기강점검-

감사기간

- 실지감사: 2014.03.20. ~ 03.26. (5일간)

감사인원 : 총 4명

지적사항 : 확인서 1건, 현지조치 3건



청렴윤리부
대한지적공사

I. 감사 개요

1. 감사목적

이번 기강감사는 “취약시기(VIP 해외순방) 공사 임직원에 대한 직무감찰 및 복무점검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직원 비리·비위행위의 사전 예방으로 반부패·청렴 윤리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감사대상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8개 본부 내 16개 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함.
【붙임】 점검대상기관현황 1부.

3. 감사기간 및 인원 등

2014.03.20.(목) ~ 2014.03.26.(수) 5일간 2개 반 4명으로 구성

○ 점검총괄 : 청렴윤리부장

- 1반: 차장 ○○○, 과장 ○○○(대구·경북분소)

- 2반: 차장 ○○○(경남분소), 과장 ○○○

4. 감사중점 사항

이번 감사는 “취약시기(VIP 해외순방) 감찰 및 공직기강 점검” 으로 다음 사항을 집중 점검함

○ 직무감찰

- 금품·향응수수 등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
- 기관장 부재 시 업무처리 및 복무기강 위반행위
- 근무시간 내·외 음주운전 및 도박, 사행성 행위 등

○ 복무관리 점검

- 출·퇴근, 출장, 외출, 특근, 휴가, 무단이석 등 준수 여부

※ 유연근무 이행 및 금요일 오후 지방근무자의 연고지 조기퇴근 행위 점검

- 각종 제 장부 작성·비치 여부
- 근태리더기 운영 및 최종퇴실점검부 작성·관리 적정성 여부
- 기타 점검
 - 문서관리 및 정보 보완 준수
 - 비상연락망 체계 현실화 및 에너지시책 준수 여부

Ⅱ. 감사처분 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근태처리 소홀

대 상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복무규정」 제7조(출근, 결근, 지각 등) 제2항 “직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결근일수(예정일수)를 기재한 신고서를 당일 12시까지 소속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10조(출장) 제1항에 따라 직원에게 출장을 명령하는 때에는 출장명령부를 사용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출장명령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래 【현황】 과 같이 2014.3.21.에 기술직5급 ○○○은 당일 본부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에 참석하였으며, 기술직5급 ○○○은 병원진료를 위한 1일 결근을 하였음에도 일일출장명령 및 병가처리 없이 근무상황카드에 “출근” 으로 처리하는 등 직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현 황】

소 속	직 · 성명	사 유	근무상황 처리내역	비 고
○○○지사	기술직5급 ○○○	새업무(공간정보)아이디어 발굴 워크숍 참석	출근처리	출장명령 미승인
○○○지사	기술직5급 ○○○	병원진료를 위한 결근	출근처리	병가원 미처리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관련 규정에 대하여 해당지사 및 소속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